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물품관리사무 위임, 기증품 취득 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에 물품운용관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각 담당관·과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 받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기증품 취득시에는 권한의 위임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 개정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및 삭제, 조문일치 등으로 내용일부를 신설 및 수정 삽입하는 것으로 물품운용관 지정, 기증물품 취득절차 등에 따른 세부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